

구미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 번	안 호	
--------	--------	--

제출일자 : 2009. 6.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구미 원평1구역 주택단지는 대부분이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건축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당해 구역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을 도모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 자력으로는 주거환경개선이 불가능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통해 정비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 구미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정비구역 및 면적

- 위 치 : 구미시 원평동 330-2번지 일원
- 면 적 : 58,636m²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 주된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계획세대수 : 1,675세대(4,690명)
- 건 폐 율 : 29.06%
- 용 적 률 : 447.58%

3. 참고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현황도 <위치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도>
- 관련기관(부서) 의견 검토

구미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 사업개요

- 사업명 : 구미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위치 : 구미시 원평동 330-2번지 일원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 계획인구 및 세대 : 4,690명(1,675세대)
- 토지이용계획

구분	계	택지용지 (공동주택)	공공시설용지			비고
			공공청사	완충녹지	도로	
면적(㎡)	58,636	44,242	1,000	5,047	8,347	
비율(%)	100.0	75.4	1.7	8.6	14.3	

- 추진배경 : 주민제안에 의한 사업신청
- 사업시행자 : (가칭)원평1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황준영
- 예상사업시기 : 정비구역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2.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08. 12. 30 :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제안
- 2009. 04. 08 : 관련기관(부서)협의 및 보완 완료
- 2009. 04. 20 ~ 05. 20 :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
- 2009. 05. 15 : 주민설명회 개최
- 2009. 06월중 : 구미시의회 의견청취
- 2009. 07월중 : 구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개최
- 2009. 08월중 : 정비구역신청(경상북도)
- 2009. 10월중 : 경상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
- 2009. 11월중 : 정비구역지정 결정 및 고시(경상북도)
- 2010. 05월중 : 사업인가 및 시행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	25	주간선 도로	1,950	광2-2	대1-2	일반 도로		건고 211 (‘70.5.12)	
변경	"	3	4	25~ 30	"	1,950	"	"	"			일부구간 노폭확장 (L=183m)
기정	대로	3	7	25	주간선 도로	4,750	광2-2	대3-8	일반 도로		건고 211 (‘70.5.12)	
변경	"	3	7	25~ 33	"	4,750	"	"	"			일부구간 노폭확장 (L=291m)
신설	중로	1	A	20	집산 도로	289	대3-4	소2-7	일반 도로			노선신설
신설	중로	1	B	20	집산 도로	213	대3-7	중1-A	일반 도로			노선신설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444	대3-7	중1-4	일반 도로		경북고 114 (‘74.5.11)	
변경	"	2	4	8	"	231	중1-A	"	"			노선축소 (L=213m)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414	대3-7	중1-4	일반 도로		경북고 114 (‘74.5.11)	
변경	"	2	5	8	"	207	중1-A	"	"			노선축소 (L=207m)
기정	소로	2	7	8	집산 도로	1,078	대3-4	중1-4	일반 도로		경북고 114 (‘74.5.11)	
변경	"	2	7	8	"	789	중1-A	"	"			노선축소 (L=289m)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390	대3-7	중1-5	일반 도로		경북고 114 (‘74.5.11)	
변경	"	2	9	8	"	272	중1-B	"	"			노선축소 (L=118m)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412	중1-4	소2-9	일반 도로		경북고 114 (‘74.5.11)	
변경	"	3	8	6	"	203	"	중1-A	"			노선축소 (L=209m)
폐지	소로	3	9	6	국지 도로	284	대3-4	소2-4	일반 도로		경북고 114 (‘74.5.11)	
폐지	소로	3	10	6	국지 도로	198	대3-4	소3-8	일반 도로		경북고 114 (‘74.5.11)	

나.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원평1 소방파출소	소방 파출소	원평동 198번지 일원	-	증)1,000	1,000		

다. 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산업로 (대3-7호선)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원평동 272-3번지 일원	-	증)5,047	5,047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관련법규에 의함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명	면적 (㎡)	가구 및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가구	획지	위치	면적 (㎡)				
신설	구미 원평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58,636	계			58,636				
			1	1	1-1	38,59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500 이하	120 이하
				2	1-2	5,648	〃	80 이하	1,000 이하	120 이하
				3	1-3	1,000	소방파출소 및 부속용도	관계법령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4	1-4	5,047	완충녹지	-	-	-
			-	-	-	8,347	도로	-	-	-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 ◦ 임대주택 건설 규모 : 전체 세대수의 8.5% 이상 ◦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주택 규모 : 임대주택의 15% 이상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련법규에 의함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 보전 계획	◦ 대상지 내부에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 ◦ 본 사업으로 기존의 노후불량주택을 재개발함으로써 양호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지역내 주택의 질 향상 ◦ 대기질 : 청정연료(LNG)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공원 및 녹지조성등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 수질 : 우수는 구역내 도로 측구로 자연유하시키며, 오수는 차집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최종 처리 ◦ 폐기물 :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설폐재 등은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 소음/진동 : 차량속도 제한 및 경적사용금지, 완충녹지 조성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 일조 장애: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함	

나.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재난 방지 계획	◦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개발사업에 따른 재난 피해에 대비하여 재해시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등의 설치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 ◦ 재난예방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방지, 결부함의 즉시 보수, 하중관리, 옥상-발코니-계단난간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난 방지 ◦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유류, 가스 등의 관리, 소화수의 확보, 소방도로등 확보 ◦ 화재 - 정비구역내 아파트 내부재료와 상가 건축물은 가능한 불연재사용 권장 - 건축물의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시 방화시설 설치 강화 - 소방도로의 정비 및 건축물의 단계적 전기시설 점검 강화 - 소방장비의 증설과 현대화 및 소화전, 저수조 등의 시설 설치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은 관로의 신설을 통한 블록화를 추진하며 가공선의 지중화 촉진 ◦ 교통사고 - 교통시설의 정비와 관리운영의 효율화로 사고 예방 -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강화와 표식판 설치 및 계몽지도 실시 - 사고다발지역과 학교주변 등에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교통통제 및 신호체계 정비 - 단지내 통과교통은 억제하고 교통량이 많은 교차지점은 신호체계 의무화 - 단지내 도로는 차도와 보도를 원칙적으로 분리토록 계획 - 교통안전표지판 및 신호체계 정비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가. 학교환경위생 보호

- 「학교보건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의 학교환경위생 정화 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규정에 의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토록 함

나. 일조권 보호

- 학교시설의 일조권 보호를 감안한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계획을 수립

다. 통학 안전 보호

- 기존 도로의 확폭 및 보도 설치를 통해 통학 안전성을 제고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통학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교통처리계획 수립

8.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구미 원평1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미시 원평동 330-2번지 일원	-	58,636	58,636	정비 구역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8,636	-	58,636	100.0	
준주거지역	51,065	-	51,065	87.1	
일반상업지역	7,571	-	7,571	12.9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라.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구모와 조성계획

도 면 표 시 번 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	
1-1	1	38,594	1	원평동 330-2번지 일원	38,59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5,648	2	원평동 330-2번지 일원	5,64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3		1,000	3	원평동 198번지 일원	1,000	소방파출소 및 부속용도
1-4		5,047	4	원평동 272-3번지 일원	5,047	완충녹지
-	-	8,347	-	-	8,347	도시계획도로
합 계		58,636				

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조서

도 면 표 시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1-1	1	1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 폐 율	◦ 30% 이하
			용 적 률	◦ 500% 이하
			높 이	◦ 120m 이하
1-2	1	2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1,000% 이하
			높 이	◦ 120m 이하
1-3	1	3	용 도	◦ 지정용도 : 소방파출소 및 부속용도
			건 폐 율	◦ 관계법령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용 적 률	◦ 관계법령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높 이	◦ 관계법령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바. 교통처리계획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추후 반영하여 계획

10. 기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기존 건축물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

- 대상지 구역별 입지특성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설치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한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 및 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명	면 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 설	구미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정 비구역	58,636	원평동 330-2번지 일원	222	-	-	222	-	

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도로계획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류4호선	대로3류4호선	· 일부구간 노폭확장 - 폭원 : 25m→25~30m (L=183m)	· 사업대상지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일부 구간 노폭확장
대로3류7호선	대로3류7호선	· 일부구간 노폭확장 - 폭원 : 25m→25~33m (L=291m)	〃
신설	중로1류A호선	· 노선신설 - 폭원 : 20m - 연장 : 289m	· 사업대상지로의 안전한 진출입 및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신설
신설	중로1류B호선	· 노선신설 - 폭원 : 20m - 연장 : 213m	〃
소로2류4호선	소로2류4호선	· 노선축소 - 연장 : 444m→231m	· 단지 진출입로(중1-B호선) 확장에 따른 노선축소(L=213m)
소로2류5호선	소로2류5호선	· 노선축소 - 연장 : 414m→207m	·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사업대상지내 노선축소(L=207m)
소로2류7호선	소로2류7호선	· 노선축소 - 연장 : 1,078m→789m	· 단지 진출입로(중1-A호선) 확장에 따른 노선축소(L=289m)
소로2류9호선	소로2류9호선	· 노선축소 - 연장 : 390m→272m	·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사업대상지내 노선축소(L=118m)
소로3류8호선	소로3류8호선	· 노선축소 - 연장 : 412m→203m	·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사업대상지내 노선축소(L=209m)
소로3류9호선	-	· 노선폐지	·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사업대상지내 노선폐지
소로3류10호선	-	· 노선폐지	〃

○ 공원 및 녹지 계획

- 단지과 접한 산업로(대3-7호선)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 기능을 위한 완충녹지 설치
- 지하주차장 설치로 인해 지상부에 보다 많은 오픈스페이스 확보하여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을 설치

○ 상수도 계획

- 단지내 상수도시설은 사업시행시 전면 개체
- 상수도 공급계통 : 구미정수장 중앙배수지에서 공급
- 계획 급수량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인구계획(안)	인	4,690	-
보 급 율	%	100	-
1인1일 최대급수량	ℓ/인·일	450	구미시도시기본계획상 2010년 지표
1일 최대급수량	m³/일	2,111	1인1일 최대급수량 × 계획인구
시간 최대급수량	m³/h	132	(1일 최대급수량 ÷ 24) × 1.5

○ 하수도 계획

- 단지내 하수도시설은 사업시행시 전면 개체
- 하수도 공급계통 : 구미시 중앙처리분구에 포함
- 계획 오수발생량 산정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인구계획(안)	인	4,690	-
1인1일 최대오수량	ℓ/인·일	200	환경부고시 제2009-70호 기준 (공동주택)
1일 최대오수량	m³/일	938	1인1일 최대오수량 × 계획인구
지하수유입량	m³/일	141	1일 최대오수량 × 15%
계획 1일 최대오수량	m³/일	1,079	1일 최대오수량 + 지하수량
계획시간 최대오수량	m³/h	73	{(1일 최대오수량×1.5)+지하수량}÷24

○ 주차장

- 단지내 주차장은 일부 근린생활시설 이용객 또는 장애자를 위한 주차장외 지하주차장 설치

구 분		계획(면)	비 고
주차대수	계	2,133	법정주차대수 : 1,867대 계획주차대수 : 2,133대 (세대수당 1.27대)
	지 상	36(장애인 24대)	
	지 하	2,097	

《참 고 사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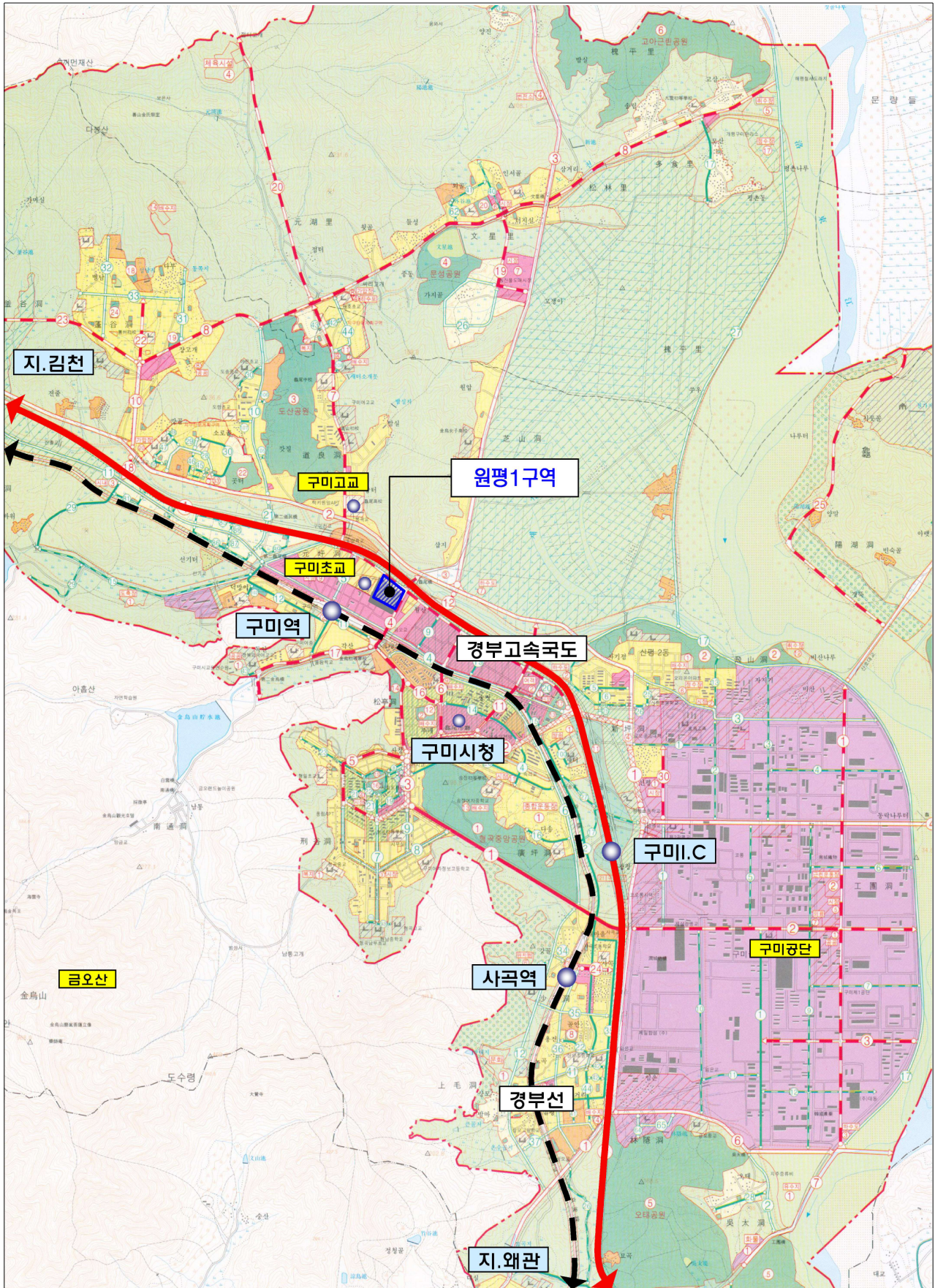
□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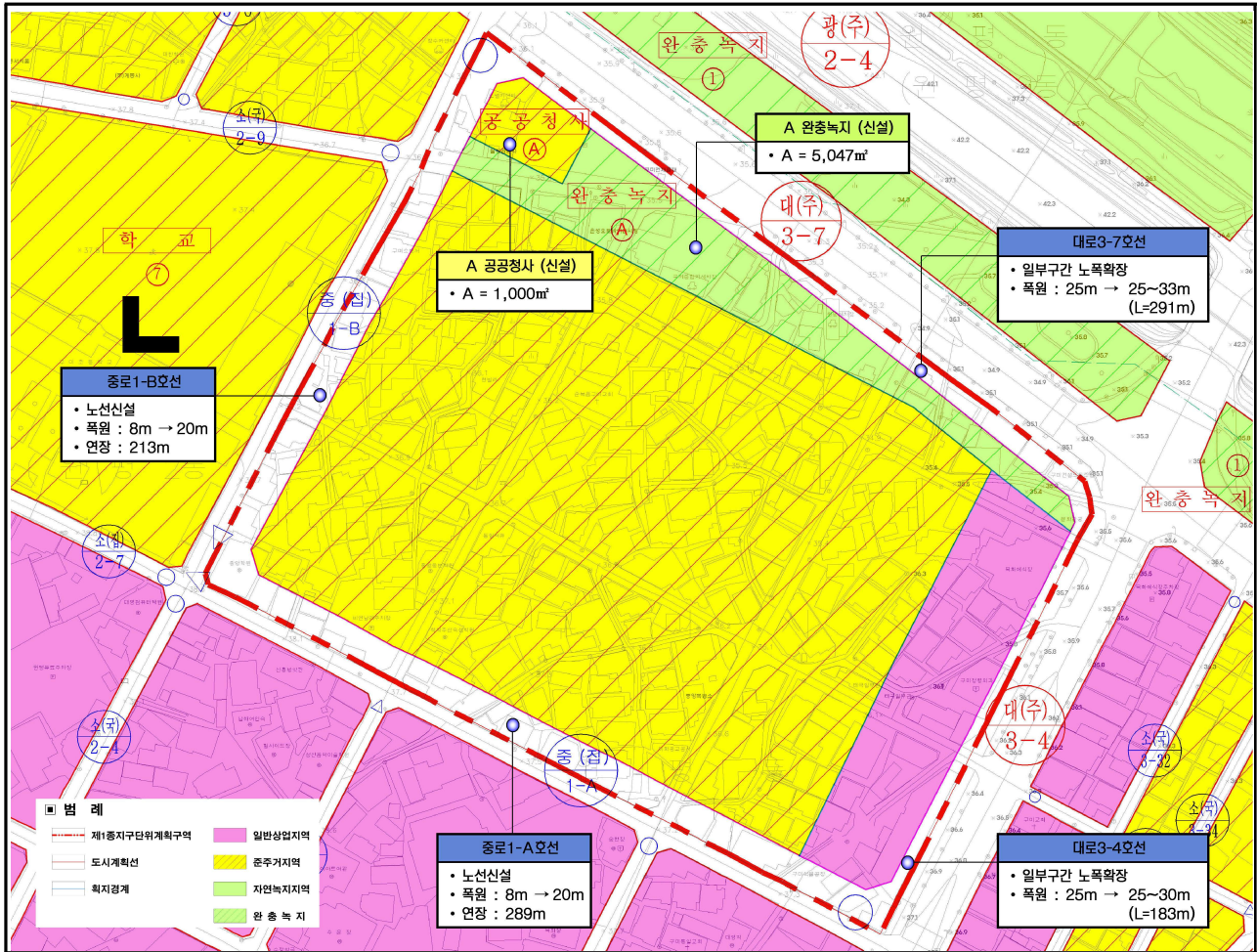
- ①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2009.5.27>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7의2. 삭제 <2009.4.22>
- 7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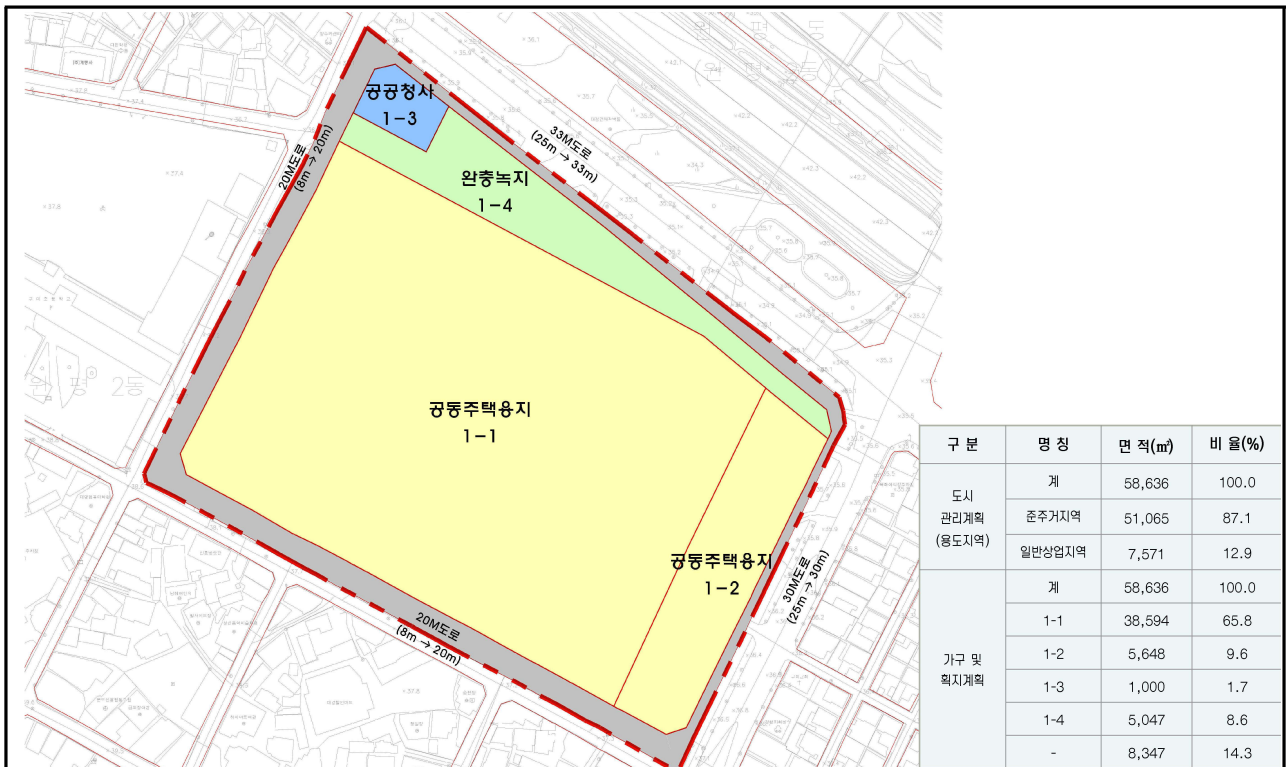
위 치 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도



토지이용계획도



건축배치도(안)



건축조감도(안)



현황사진(사업 시행 전)



현황사진(사업 시행 후 조감도)



□ 관련부서 · 기관 협의내용 및 조치계획

관련부서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교통행정과	1차 협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따른 협의도서 검토 결과 사업시행인가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의거 교통영향 분석·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인가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의거 교통영향 분석·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심의를 득하겠음	추후 반영
	2차 협의	○ 협의도서 검토결과, 별도 의견 없음	—	—
문화예술 담당관실	1차 협의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여부 및 처리 절차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구미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미술 장식품 설치 대상임	－ 구미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겠음	추후 반영
		－ 미술 장식품 설치 심의 신청서를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4월이내 제출	－ 미술 장식품 설치 심의 신청서를 착공신고한 날로부터 4월이내 제출 하겠음	추후 반영
		○ 문화재보호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사업임	○ 사업시행인가시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겠음	추후 반영
정보통신 담당관실	1차 협의	○ 정보통신설비분야 설계도면 검토대상이 아님으로 추후 주택사업승인시 재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인가시 상세도서를 작성하여 재협의 하겠음	추후 반영
새마을과	1차 협의	○ 비상급수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없음을 회신합니다.	—	—
회계과	1차 협의	○ 공유재산 － 현황이 도로 등인 경우 행정재산은 관련부서와 협의 － 구미소방서 원평119안전센터에 관한 사항은 구미소방서와 협의	－ 해당 관련부서와 관련기관에 협의 하였음	반영
		－ 공유잡종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1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의거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매각가능하며,	－ 공유잡종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1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의거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제 획	비 고						
회계과	1차 협의	○ 국유잡종재산은 - 원평989-137, 989-140, 989-185, 989-192, 989-215, 989-216번지는 한국토지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재산이니 해당기관으로 협의요청하시기 바라며, - 구미시 관리재산은 『국유재산법』 제2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의거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매각가능하며, ○ 국·공유재산은 공사 착공전 소유권 취득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토지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사업시행인가시 한국토지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와 협의토록 하겠음 - 구미시 관리재산은 『국유재산법』 제2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의거 사업시행자가 매각하도록 하겠음 ○ 국·공유재산은 공사 착공전 소유권 취득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추후 반영 추후 반영						
체육진흥과	1차 협의	○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1항 :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table><tr><td>구 분</td><td>체 육 시 설 종 류</td></tr><tr><td>운동 종목</td><td>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기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td></tr><tr><td>시설 형태</td><td>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td></tr></table>	구 분	체 육 시 설 종 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기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겠음	추후 반영
		구 분	체 육 시 설 종 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기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관련부서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사회복지과	1차 협의	○ 사업인가시 별도 협의	○ 사업시행인가시 별도 협의 하겠음	추후 반영
청소행정과	1차 협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 당해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할 경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 당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겠음	추후 반영
		• 당해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승인을 득한 후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사용개시 10일전까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당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를 제출하겠으며, 설치승인을 득한 후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겠음	추후 반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관련 •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 시행령 제4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 : 30만 제곱미터이상 － 시행령 제4조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본 사업대상지 면적은 58,636㎡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 납부의 경우 해당 없음	—

관련부서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환경위생과	1차 협의	○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2 제1호 가. 도시의 개발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2)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30만㎡ 이상인 경우 해당	—
		마. 도로의 건설 (1) 도로법 제23조의2에 따른 도로정비기본계획 (2) 도로법 제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1)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 (2) 공공시설(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	
		파. 체육시설의 설치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해당될 시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 단, 비고 제3호에 해당될 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며 비고 제4호에 의거 가목(2), 비고 제5호에 의거 가목(3), 비고 제7조에 의거 마목(2)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 검토대상이며, 비고 제8호에 의거 파목(2)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이라함은 등록체육시설(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업)을 말함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행정계획)일 경우 동법 제25조의5(의견수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자료)를 작성하여 환경성검토 협의회의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개최를 구미시 환경위생과로 요청하여야함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이 아니므로 해당없음	—

관련부서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환경위생과	1차 협의	○수질오염총량제(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사업,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개발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여 협의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인가시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개발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여 협의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2차 협의	○본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으로 계획되어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 방침」(환경부훈령 제808호, 2008.10.31)의 규정에 의거 1단계지역 개발할당부하량 중 개발부하량의 60% 범위내에서 검토가 가능함.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 사업인가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위 방침에 의거 개발에 따른 배출부하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재협의한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인가시 「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훈령제808호, 2008.10.31)에 의거 개발에 따른 배출부하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시민만족과	1차 협의	○정비구역 지정완료 후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전 아래와 같이 신고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대상임	- 사업시행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하겠음	추후 반영
		-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임	- 사업시행전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하겠음	추후 반영
건설과	1차 협의	○해당사항 없음	—	—
도로과	1차 협의	○국·공유지(도로)관련사항 :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인가시 토지조서(확정면적 산정)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함	○사업시행인가시 토지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관련부서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도로과	1차 협의	○ 사업부지내 진출입 공사차량에 대하여 별도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인도공사 완료 후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 사업부지내 진출입 공사차량에 대하여 별도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으며, 인도공사 완료 후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겠음	추후 반영
		○ 주간선도로인 대로3-7호선과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사업지 서측 도로(중 2-A, B=15M)를 중로1류(B=20.0M이상, 4차로)로 변경 검토	○ 사업지 서측 중로 2-A호선을 15m에서 20m로 확폭하여 중로 1-B호선으로 변경하고 차로운영 계획을 4차로로 함	반영
		○ 정비구역지정 후 사업시행인가시 도로 시설물설치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사업시행인가시 도로시설물설치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의 하겠음	추후 반영
	2차 협의	○ 특이 의견은 없으며,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하겠음	추후 반영
건축과	1차 협의	○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2항,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용(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52호)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용고시(경상북도 고시 제 2006-275호)의 규정에 적합하고,	-	-
		○ 협의된 서류를 근거로 건축법 및 주택법의 적합여부 판단은 불가하며, 추후 사업시행 인가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업시행인가시 관련법규에 의거 상세도서를 작성하여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공원녹지과	1차 협의	○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완충녹지 조성(A=5,047㎡) - 적정	-	-
		○ 아파트 북쪽의 계획 완충녹지(5,047㎡)는 주민들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동선(보도), 휴게 쉼터를 배치하고, 아파트 외부의 보도(2.5m이상)에는 기존 가로수(은행나무)에 따라 동일한 수종의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시행시 협의 검토됨이 바람직함.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도시 디자인과	1차 협의	○ 스카이라인 및 도시경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재개발되는 원평지역 전체의 스카이라인이 고려되어야 함	- 아파트의 층수 조정으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주변 재개발 단지와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관련부서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도시 디자인과	1차 협의	- 시가지측 및 고속도로측에서의 경관 조망이 지나치게 막혀 보이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음	- 아파트 평수를 하향조정하여 동별 볼륨감을 줄이고 동간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겠음	추후 반영
		- 건물이 금오산의 경관과 겹쳐지는 문제를 고려	- 동간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금오산 방향으로 열린 공간 확보하였음	추후 반영
		○ 매스 스케일이 주변 도시의 스케일에 비해 과도함 - 수직적 변화 및 배치 계획의 연구가 필요	- 아파트의 층수조정으로 수직적 변화 및 동별 볼륨감 조정으로 스케일을 축소하여 원활한 배치 계획이 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 타워형과 판상형 배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	- 타워 및 판상형 아파트의 변경으로 배치형태의 변화를 주겠으며, 판상형 아파트를 전체 배치형태에 조화롭게 재배치 하겠음	추후 반영
		- 중층고밀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	- 중층고밀도의 배치형태는 열악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므로 주민생활의 품질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고층 저밀도의 배치계획이 필요함	추후 반영
		○ 단지 배치가 병풍형으로 되어 있어 단지 내부의 소음, 바람소통 등 생활환경요소에 저해되는 면이 있어 오픈형 배치계획 검토가 필요	○ 건물 매스 축소로 동간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소음 및 바람소통이 원활하도록 고려하겠음	추후 반영
		○ 단지내 대규모 중정의 생활편익시설이 단지내 도로로 인해 저해되지 않도록 고려	○ 단지내 지하주차장 진입 램프를 분산 배치하여 쾌적한 단지내 도로망을 형성하였고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쾌적함을 고려하겠음	추후 반영
		○ 대규모 상가 계획은 생활환경등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규모 및 동선계획을 세밀하게 고려되어야 함	○ 추후 상세 계획시 충분히 반영 하겠음	추후 반영
		○ 도로변에서 일정공간을 띄우고 건물을 배치하여 공공 공간 배려	○ 도로에서 일정공간이상 확보하여 건물을 배치하였고 경부고속도로 측 도로에는 완충녹지, 구미초등학교 측 도로에는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하겠음	추후 반영
		○ 고층건물 밀집지역임으로 외부 도장 마감이 최소화 되도록 고려	○ 외부도장 마감미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관련부서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도시 디자인과	1차 협의	○ 색채계획, 야간경관계획은 향후 많은 관심 필요	○ 추후 경관심의 시 반영하겠음	추후 반영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과	1차 협의	○ 상수도 공급은 가능하나, 본 정비사업에 따른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 정비사업에 따른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 정비구역내 매설되어있는 우리시 상수관 처리계획(이설 등), 소요수량, 인입관로, 블록화구축을 위한 유량계설치등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정비구역내 매설되어 있는 상수관처리 계획(이설 등), 소요수량, 인입관로, 블록화구축을 위한 유량계설치등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별도 협의 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과	1차 협의	○ 우· 오수분리지역임	○ 우· 오수분리로 계획하겠음	추후 반영
		○ 하수도법 제27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 신·증축시 배수설비설치신고 협의	○ 하수도법제27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 신·증축시 배수설비설치신고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임 (오·폐수 10m³/일 이상 부과대상)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하겠음	추후 반영
원평1동 사무소	1차 협의	○ 타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면 낙후된 구미시 원평동 330-2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이 가하다고 사료됨	-	-
구미교육청	1차 협의	○ 학생수용에 관한 의견 - 동지역의 재개발시 구미초등학교 통학구역이며 학교의 제반여건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학교시설로는 학생수용이 불가하나, 대규모 주택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경우 학생수용이 가능하며, - 증축비용 부담방안을 반드시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계획 확정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시 구체적인 수용시설 등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개발과 학교시설 증축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한정된 교육재정 내에서 개발지역의 학교시설 증축비용을 우리교육청에서 부담하기 어려움에 따라 우리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규모 주택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증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겠으며, 사업시행인가시 구체적인 수용시설 등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 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관련부서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구미교육청	1차 협의	○ 학교부지 편입에 관한 의견 - 증축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였을 시 사업지구내 학교부지는 필요치 않음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 학교보건법 제6조의3,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에 따라 동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교육감은 학교의 보건·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의 보건·위생,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구미시에 요구사항을 건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구미소방서	1차 협의	○ 원평119안전센터 현황 • 부지위치 : 구미시 원평동 238번지 • 소유자(관리자) : 구미시(구미소방서)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 건축면적(연면적) : 175.9㎡(205.6㎡) ○ 협의도서 검토결과 • 소방시설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및 도서가 미비하여 검토가 불가능 함	• 사업시행인가시 소방시설 상세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추후 반영
		• 공공청사(원평119안전센터) 계획 검토 - 위 치 : 공공청사의 위치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면 적 : 공공청사(119안전센터) 부지는 600㎡로 계획하고 있으나, 신축하는 119안전센터는 1,000㎡ 이상의 부지와 660㎡이상의 건축물이 소요되어, 가능하면 반영 협조 바랍니다. ※ 현재 원평119안전센터는 이전 추진 중이나, 부지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바, 부지 확보 및 이전 확정 시 추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 공공청사(119안전센터) 부지는 1,000㎡이상 확보토록 하겠음	반영
	2차 협의	○ 재협의 관련 도서 및 서류를 검토한바 이의가 없음	-	-

관련부서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영남에너지 서비스(주)	1차 협의	○ 도시가스시설 및 투자비 현황 - 관경 : 200~250A, 연장 : 667M - 투자비용 : 151,322천원 (VAT.별도) ○ 도시가스 재공급 투자비 - 투자비용 : 203,632천원 ○ 재건축 구역내 기존배관 투자비 및 재건축 시 신규 투자비에 대한 협의가 재건축 조합측과 이루어진 후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 사업시행인가시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주)KT 구미지사	1차 협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구미시 원평동 330-2번지 일원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 KT구미지사에서 통신설비 공급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사설계시 사설 맨홀 위치 선정시 협의 시공하여 주시면 통신설비 공급에 이상 없음을 회신합니다	○ 공사설계시 사설 맨홀 위치 선정·협의후 시공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한국전력 공사	1차 협의	○ 현재의 정비계획 수립(안)에 의하면 전력설비 공급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전기 수전을 위한 공사기간을 감안하시어 적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수전을 위한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적기에 신청하겠음	추후 반영
구미경찰서	1차 협의	○ 중로 2-A호선 2차선 도로를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4차선 도로로 확장	○ 사업지 서측 중로 2-A호선을 15m에서 20m로 확폭하여 중로 1-B호선으로 변경하고 차로운영 계획을 4차로로 계획	반영
		○ 중로 2-A호선과 대로3-7호선이 접속하는 ㉔지점 교차로 신설 및 신호기 설치	○ 중로 2-A호선과 대로 3-7호선이 접속하는 교차로를 신설하여 신호운영(LED 신호기 설치)토록 하겠음	반영
		○ 대로 3-7호선에서 중로 2-A호선이 진입하는 좌회전 전용차로 확보	○ 대로 3-7호선에서 중로 2-A호선의 원활한 진입이 가능토록 좌회전전용차로를 확보하겠음	반영
		○ 중로 1-A호선 ㉔지점 횡단보도를 ㉔지점으로 이설	○ 중로 1-A호선 ㉔지점 횡단보도를 ㉔지점으로 이설하겠음	반영
		○ 대로 3-4호선(선산로) ㉔지점 사거리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신호기 설치	○ 대로 3-4호선(선산로) ㉔지점 사거리에 LED신호기를 설치하여 신호운영토록 하겠음	반영

관련부서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구미경찰서	1차 협의	○아파트 출입구 경보 등 설치	○아파트 주출입구에 경보등을 설치토록 하며 아파트주차장출입구(지하주차장 램프진출입부)에는 경보등(벨)을 설치하겠음	반영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시 별도 협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시 관할경찰서와 협의 후 설치하겠음	추후 반영
	2차 협의	○협의도서에 대하여 특이의견 없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시 별도 협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시 별도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구미5837 군부대	1차 협의	○평시 임무수행 여건, 군사보안측면, 장차작전수행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한요소는 없으나, ○구미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시행 시기가 불명확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세부계획 추진시 군부대와 재협의 하는 조건으로 동의함	○세부계획 추진시 재협의 하겠음	추후 반영
도시과	1차 협의	○계획도로 중로 1-A호선, 중로 2-A호선, 대로 3-7호선, 대로 3-4호선 자전거 도로와 보도 계획을 현재 추진중인 원평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원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연속성있게 통일하여 설치.	○계획도로 중로 1-A호선, 중로 2-A호선, 대로 3-7호선, 대로 3-4호선 자전거 도로와 보도 계획을 현재 추진중인 원평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원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연속성있게 설치하였음	반영